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639호
- 나. 발 의 자 : 문성호 의원(찬성자 39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3월 29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근거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는 등 전통무예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을 적극 도모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함.

3. 주요내용

- 가. 전통무예지도자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나.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써 전통무예를 보존·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제3항)
- 다.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필요 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라. 전통무예 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우리의 고유한 전통무예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서울시의 전통무예 활성화 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 현황

- 전통무예는 전통문화와 그 맥을 같이하여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스포츠로서 경쟁에 따른 결과를 중시하는 현대 스포츠의 한계를 넘는 문화적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종목 및 단체의 생성과 소멸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실시한 2019년 5월 기준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통무예 종목은 전국에 약 64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는 총 231개로 파악되고 있음.

1) 「전통무예진흥법」 제4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64개의 전통무예 종목 중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기준으로는 정회원 13개²⁾, 준회원 3개(카라테, 카바디, 킥복싱)의 단체를 비롯해 인정단체 1개(특공무술)가 존재하고 있음.

다. 서울시 전통무예 지원 현황

- 서울시 또한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몇 개의 종목과 단체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임.
- 서울시에서는 민간단체의 대회 지원을 통해서만 전통무예 분야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전통무예민간단체 생활체육대회 지원 공모를 통하여 총 5개 단체에, 1억 3천5백만원의 지원금을 결정한 바 있음.

< 전통무예 관련 선정 대회 현황 >

연번	단체명	사업명(대회)	예상참가 인원(명)	심의 결정액(천원)
1	서울시국학기공협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뇌활용 능력향상 브레인스포츠 국학기공교실	975	15,000
2	세계어린이스포츠위원회	2023 서울컵 온·오프라인 국제오픈어린이태권도대회	1,500	40,000
3	세계합기도무도연맹	2023 서울 세계 합기도 페스티벌	700	20,000
4	서울시대권도협회	2023 서울특별시 한마음 생활체육태권도대회	1,000	30,000
5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2023 전국청소년화랑대회	1,600	30,000

- 개정안의 발의 배경은 전통무예의 진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정회원): 대한검도회, 대한국학기공협회, 대한궁도협회, 대한우슈협회, 대한태권도협회, 대한택견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레슬링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씨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펜싱협회, 대한양궁협회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조례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기 위해 ▶전통무예지도자 정의 신설 ▶서울시장의 책무로 전통무예를 보존·진흥을 위한 노력 명시 ▶서울시장이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전통무예 관련 협력체계 구축과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필요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라. 세부내용 검토

(1) 전통무예지도자의 정의(안 제2조제3호)

- 개정안은 “전통무예지도자” 를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규정한 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조례간 용어의 정합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3항)

- 개정안은 전통무예가 지닌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서울시의 특유의 무예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있음.
-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는 기본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서울특별시의 특유의 무예”가 뚜렷하게 무엇인지 특정하기에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특유의 무예”를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발전되도록 자구 수정의견을 드림.

(3)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 개정안은 전통무예에 관련 개인·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시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세부적인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전통무예의 종목 간 학술 교류 활동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전통무예의 위상 제고를 위한 명소화 등 구체적인 사업들을 적시하고 있음.
- 이들 사업은 전통무예 진흥 사업 추진의 다각화·활성화 시키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4) 전통무예 실태조사(안 제4조의2)

- 개정안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서울시가 지금까지 전통무예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없기 때문에 전통무예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전통무예 단체를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실태조사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이 수립·추진되기 전에 시행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정책방향의 수립에 기여

하고 정확한 현황의 파악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5) 표창(안 제5조)

- 개정안은 표창의 공적 대상을 다양하게 열거하여 표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전통무예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서 표창 수여의 방법을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창 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표창의 경우 별도 조례에서는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 및 금지하는 규정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자구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 수정의견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5조(표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무예의 보전 및 전승 기여 2. 전통무예의 대중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3. 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 또는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4. 서울특별시가 개최하는 대회에서 우수 성적 획득 5.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적 	<p>제5조(표창) 시장은 <u>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u>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삭 제></p>

의안번호
639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문성호 의원	2023.03.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25. 제정되어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에 서울특별시의 실태조사 근거 및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는 등 전통무예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을 적극 도모 <p><주요 입법 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지도자 정의 신설 ○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써 전통무예를 보존·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 ○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필요 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 ○ 전통무예 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3.29. 문성호 의원 발의 ※(찬성)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아이수루,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병운,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윤희, 허 훈, 홍국표, 황철규(39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무예지도자 정의를 신설(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써 전통무예를 보존·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발의안 제3조 제3항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진흥함에 있어 전통 무예의 전형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특유의 무예로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분에서 "서울특별시 특유의 무예"의 개념이 모호하여 전문위원실의 회신 후 검토 예정 ○ 전통무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필요 사업 추진 근거 조항을 신설(원안 가결) ○ 전통무예 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원안 가결) ○ 표창할 수 있는 공적 1~5호 신설(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과 같이 표창할 수 있는 공적 사항을 규정할 경우 표창의 범위가 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조례안 유지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팀장	오부태(☎2133-2746)	담당 이미르(☎2133-2747)